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24980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개명전 이름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우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에게 66,4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012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0.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6.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27.경 원고와 사이에 D의 위 대여금 채무 원금인 66,400,000원에 관하여 ‘월 50만원씩 지급할 것을 보증하며 상환기간 동안은 년이자를 부담치 아니한다. 상환일자는 2017. 5. 8.을 첫 상환일로 정하고 매월 30일 상환날로 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행기가 도래한 보증채무 중 2017. 5.부터 2022. 6.까지 62개월간의 합계금 31,000,000원(= 월 500,000원 × 62개월)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전 남편인 D가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하였는데, 단순히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류니까 작성해 달라’고 하여 보증서(갑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당시 원고와 D가 피고에게 ‘고소인 본인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실제로는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는바,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보증계약 또한 효력이 없거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양철한